

재 결 서

이 의 재 결 : 도 시 계 획 시 설 사 업
(하천재해예방<동천변저류지>조성사업)

2013. 1.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번 호 : 12이지0396호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재해예방<동천변 저류지>조성)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이의신청인 : 김병현 외 2명

재 결 일 : 2013. 1. 18.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1. 장종극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31. 수용재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65,566,500원을 금71,475,500원으로 변경한다.
3.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재해예방<동천변 저류지>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순천시 고시 제2011-99호, 2011. 9. 5.)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8. 31. 수용재결 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1)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은 이의신청인 장종극의 물건에 대한 2012. 8. 31.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김병현, 이양엽, 장영숙의 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소유자 등의 주장

김병현, 이양엽, 장영숙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자 의견

보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3. 위원회의 판단

당사자 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대상물건에 대한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31.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65,566,500원을 금71,475,5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중 앙 토 지 수 용 위 원 회

위 원 장
직무대행

김 용 상

위 원

김 해 룡

위 원

정 태 용

위 원

홍 두 표

위 원

이 영 신

위 원

송 용 찬

위 원

유 한 준

위 정본입니다.

2013. 1. 18

중 앙 토 지 수 용 위



간사 이 상

